이 보도자료는 2023. 1. 18.(수)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 1. 18.(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 검찰·세관 합동 수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시건 중간 수시결과

- 무역대금을 가장한 해외 가상자산 투기세력 검거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하여. 현재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외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하였음
  - 이들은 속칭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송금과 가상자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제지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였고. 현재까지 기소한 송금 규모는 총 4.3조원에 이름
  - 범행 유형으로는 ① 총책, 중간책, 송금업체 대표, 해외 공범 등이 역할을 분담한 [분업형]. ② 총책이 복수의 송금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해외 공범 등과 공모한 [기업형], ③ 총책이 송금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업체들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한 **[중계형]** 등이 적발되었음
- 투기세력 일당이 **시중은행 외환송금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해외송금을 지속하며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하고 일부 은행들도 외환 영업실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불법 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점**도 확인되었음
- 향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추가 공범 및** 나머지 송금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범행 구조 개관

## 1. 가상자산을 이용한 '김치프리미엄' 수익 범죄

●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 송금 ➡**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입하여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 ➡ 가상자산 매각하여 김치 프리미엄 수익 공제 후 재집금, 해외송금 반복하며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임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코인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코인거래소의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

● 김치프리미엄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반복 송금하며 자금이 지속적 으로 순환하므로,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금이 100번 순환하게 되면 해외 송금 규모는 1조원이 되는 구조임

# 2. 다수 '범행설계 조직' 존재 확인

해외송금한 업체 계좌 등 1,000여개 관련 계좌의 거래금액 약 15조원을 추적·분석한 결과, 범행설계자인 총책을 거점으로 한 조직별로 해외 송금을 위한 다수의 무역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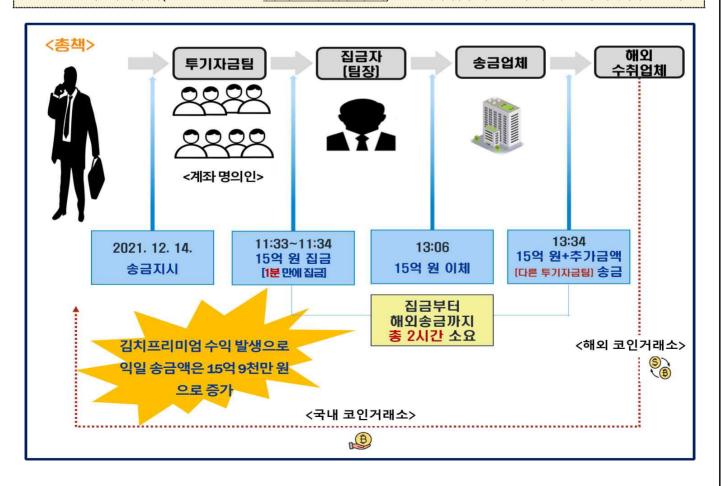
<비정상 해외송금 범행설계 조직별 분류> \*표시는 중복사용 업체

<b>범행설계조직</b> (총책)	<b>甲조직</b> (E〇〇)	<b>乙조직</b> (G○○)	<b>丙조직</b> (I〇〇)	丁 <b>조직</b> (S〇〇)	기타 조직
송금업체	¬○○* └○○ └○○ ट○○*	+00 +00 +00 -00 +00	초()() ㅋ()() ㄱ()()* ㄹ()()* 외 9개	≡()() π()() ≅()()	수사 中
송금규모	5개 업체 (2조원) 합계 4.3조	4개 업체 (0.2조원) 원 (금융당국 이첩	13개 업체 (1조원) 사건 약 6조원 중	3개 업체 (1.1조원) 72% 처리)	

- 각 범행설계 조직은 모두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였으나, 송금자금 원천, 송금증빙서류 가장 방법 등 구체적 범행수법은 조직별 범행형태에 따라 다양함
  - 범행설계자를 비롯한 가담자들이 **일부 조직간에 상호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배후 설계자도 다수 확인**함
- 실시간 변동되는 김치프리미엄에 따라 해외송금 시점을 정하는 총책의 지시하에 국내와 해외 소재 다수 공범들이 단시간 동안 유기적으로 연락 하며 정확히 역할을 수행해야 해외송금, 국내 가상자산 반입 후 매각, 수익 배분이 완료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 범행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임
  - ☞ 이와 같은 구조는 총책, 관리책, 연락책, 수거책 등이 순차 공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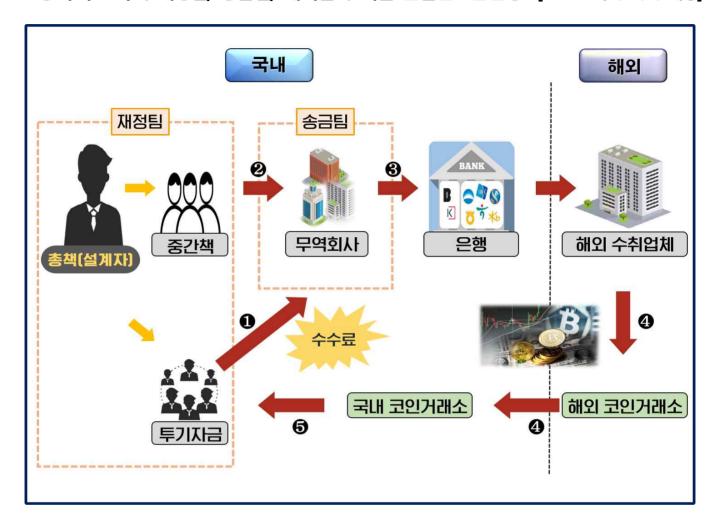
#### 구체적 범행 사례

총책의 송금지시 ➡ 투기자금팀(8명) 집금자 계좌로 1분 동안 15억원 집금 ➡ 1시간 30분 후 송금업체로 15억원 이체 ➡ 30분 후 해외송금 ➡ 익일 투기자금팀은 전일 송금액에 9천만원 추가 집금(전일 송금액 + 김치프리미엄 수익) ➡ 송금업체로 이체 후 해외송금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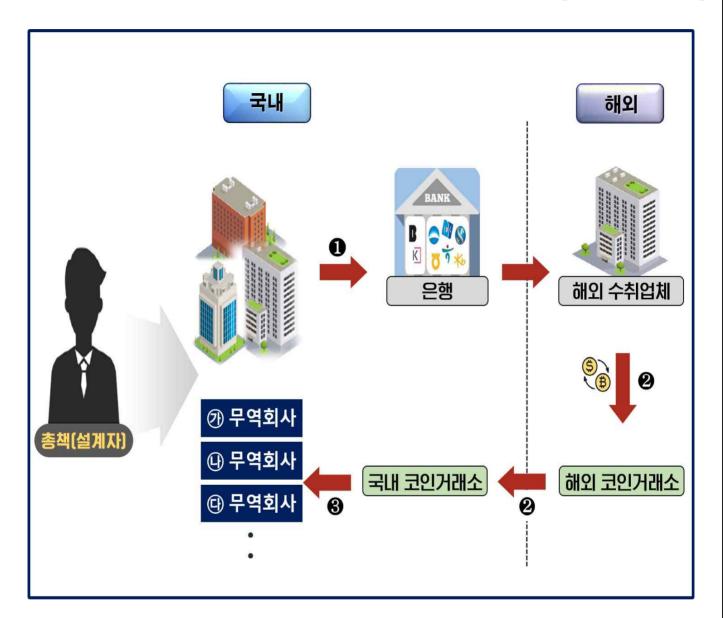
# 3. 범행설계 유형

총책 주도하에 재정팀, 송금팀, 해외팀이 역할 분담한 【분업형】[甲·乙조직이 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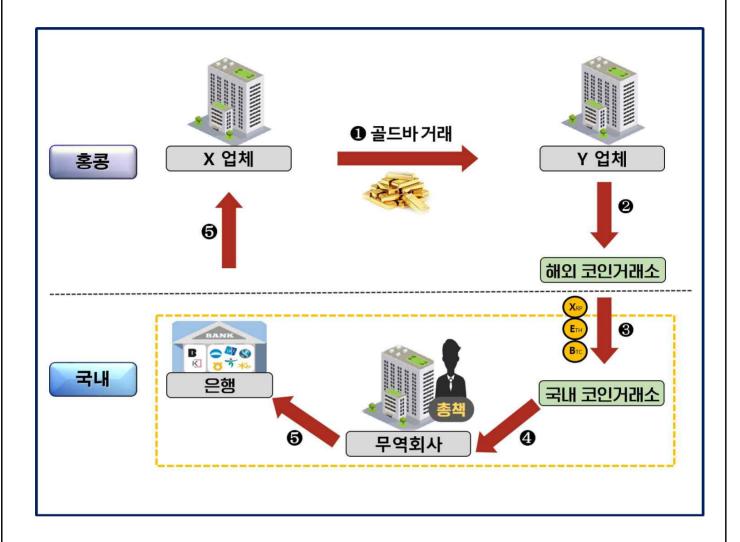
- ① [총책, 재정팀] 총책의 송금 지시에 따라 무역회사로 자금 집금 ➡
- ② [중간책, 재정팀] 송금팀에 송금액, 수익 배분율, 허위 인보이스 양식 전달 ➡
- ③ [송금팀] 허위 인보이스 작성하여 은행 제출 및 송금 신청 ➡
- 4 [해외팀]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 ➡
- **6** 가상자산을 매각·수익금 정산 후 재집금·해외송금 반복
- ※ 송금팀 공범은 송금액의 0.3~0.5% 상당 수수료를 배분받고, 총책 등 재정팀과 자금제공자는 가상자산 매각 수익금을 정산함

총책이 관리직원을 두고 페이퍼컴퍼니들을 직접 운영한 【기업형】[丙조직이 이에 해당]



- 1 [총책] 허위 인보이스 작성하여 은행 제출 및 송금 신청 ➡
- ❷ [해외팀]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 ➡
- ③ [총책] 가상자산을 매각·수익금 정산 후 재집금·해외송금 반복
- ※ 분업형과 달리 총책과 자금제공자 사이에 가상자산 매각 수익금을 일괄 정산함

# ● 해외업체간 골드바 거래에 무임승차한 【중계형】[丁조직이 이에 해당]



- ① [홍콩 X업체 Y업체] 현지(local) 골드바 거래 ➡
- ② [홍콩팀] 국내 공범 가상자산 계정에 코인(테더) 전송 ➡
- ③ [국내팀] 테더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구입 후 국내 코인거래소로 이전 ➡
- ④ [총책] 가상자산 매각·수익금 정산 ➡
- **⑤** [국내팀] 골드바 중계무역 대금을 가장하여 해외송금 반복
  - ※ 해외 송금액 대비 96~98% 상당의 테더를 수령하여 가상자산 매입 후 국내 매각 당시 실시간 김치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수익을 취득함

## 4. 불법 해외송금을 위한 자금 모집 과정

# 가. 해외송금 자금원

- 계좌추적 결과, 범행설계 甲·乙·丙·丁조직의 무역회사로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은 총 256명으로 확인되고, 자금제공자들은 본인 내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코인거래소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무역회사로 입금하는 절차를 반복함
- 대부분 투기자금인 것으로 파악되나, 가상자산 투기와 상관없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이 일부 섞인 정황도 포착되어, 이 사건 해외송금이 불법 자금세탁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함

# 나. 투기세력 간 네트워크 형성

- 송금 금액이 크고 송금된 외화가 가상자산으로 되돌아오는 회전거래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해외 송금에 따른 불법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서, 범행설계조직과 투기자금 제공자들의 공생이 불가피함
- 피고인들 중 총책 등 주범들은 투기자금 제공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단계식 모집 후 범행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직적으로 돈을 송금한 자금제공자 중 공범급 가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진행 중임

# 5. 은행 브로커의 개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거액의 외화를 반복송금하기 위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전직 은행원인 금융기관 브로커를 개입시켜 알선 명목 금품을 수수한 범행도 확인함 ● 일부 범행설계조직은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무역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송금 우대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중 금융기관 브로커를 통해 거래은행 지점장들과 접촉하여 '송금계좌 한도', '환율 적용'에 우대를 받아 범행 수익을 극대화하였음

# Ⅱ 수사 경과

● '22. 7. ~ 11. 금융당국, 자료 이첩

● '22. 9. ~ 10. 검찰·세관 합동수사 착수

● '22. 11. 14. [甲조직] 피고인 A○○, B○○, C○○, D○○ 구속 기소

● '22. 11. 30. [甲조직] 피고인 E○○ 구속 기소

● '22. 12. 9. [₱·Z조직] 피고인 F○○, G○○, H○○ 구속 기소

○ '22. 12. 19. [丙조직] 피고인 I○○, I○○ 구속 기소

'22. 12. 22. [甲조직] 피고인 K○○ 구속 기소

● '23. 1.10. **[甲조직]** 해외총책 U○○ 지명수배

○ '23. 1. 18. [甲·乙·丙·丁조직] 피고인 9명 불구속 기소

# Ⅲ 중간 수사 결과

#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구 속 : A○○ 등 11명

- 불구속 : L○○ 등 9명

#### ● 공소사실 요지

#### 범행설계 甲·乙조직

- '21. 4. ~ '22. 5. 은행에 허위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 명목 가장하여 2.2조원 해외 송금대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21. 9. ~ '22. 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1.7조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매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은행연결 브로커 H○○는 '22. 2. ~ '22. 5. 페이퍼컴퍼니 계좌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2천여만원 수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 범행설계 丙조직

- '21. 1. ~ '22. 8. 은행에 허위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 명목 가장하여 1조원 해외 송금대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21. 9. ~ '22. 8. 금융정보분석원장(FIU)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8천억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매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범행설계 丁조직

- '21. 5. ~ '22. 5. 은행에 허위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계무역 명목 가장하여 1.1조원 해외송금하여 제3자 지급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21. 9. ~ '22. 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7.8천억원의 가상 자산을 이전받아 매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 각 피고인별 세부 범죄사실은 별지 '주요 범죄사실 요지' 참조

# 2. 131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확인

● 피고인들은 김치프리미엄이 대략 3~5%('21. 4.~5.경에는 20% 상회) 정도일 때송금 실행에 착수하여, 전체 송금액 4.3조원 기준 약 1,200억~2,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투기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음



(출처 : cryprice.com)

- 현재까지 파악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은 총 131억원으로, 공범들이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가담 역할을 완수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득함
- 최초 종잣돈을 원천으로 한 반복 송금 범행이지만, 국내 유입은 가상자산인 반면 외화 4.3조원이 고스란히 해외 유출되었고, 유출된 외화는 모두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국내 실물경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3. 해외송금이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

- 해외 반출된 자금은 피고인들이 모집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금원에 한정되지 않고, 출처 불명의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로 세탁한 금원도 다액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일부 조직 총책은 불법 송금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기와 무관하게 **호주 소재 업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정황도 포착되어 경위 등 확인 예정임

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원이해외 송금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해외 송금액 일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과 연결되고 있어 계속 자금흐름을 추적할 예정임



# Ⅳ 수사 의의

# 1. 검찰과 세관의 합동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투기 범행의 실체 규명

- 금융당국의 이첩단계부터 언론 보도를 접한 주범 등 가담자들이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높아, 송금 규모 총 6조원에 달하는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곳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세관이 합동수사에 착수하였음
- 검찰은 서울세관 조사2국 소속 총 71명의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세관이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범죄에 대한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세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주요 국면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며 집행하는 방법으로 유기적인 합동수사를 진행함
- 검찰 직접 수사 중에도 서울세관 1개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체포·구속,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주범 11명 검거에 기여하는 등 검찰과 세관의 합동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음

# 2.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송금 시스템상 문제점 확인

#### 가. 외환송금 시스템상 문제점

 시중은행들은 페이퍼컴퍼니인 송금업체가 1일 수회, 회당 수억 내지 수백억원의 해외 송금을 반복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를 반출하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의심거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였음



### 나. 시중은행의 실적위주 관행이 불러온 부작용

- 은행은 외환 영업 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일부 영업점이 외환 송금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송금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계속된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됨
  - ※ 은행은 외환 송금 영업으로 전신료, 송금수수료, 매매익(FX마진) 등의 수익 취득
- 실제 한 시중은행 지점은 5개월간 320여 회에 걸쳐 '반도체 개발비' 명목의 1조 4천억원 규모 외화 송금이 계속되는 동안, 인보이스 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담당 직원은 포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범행기간 중 은행 본점 차원의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가 이루어졌음에도, 영업점에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업점은 불법 송금을 계속하였으며, 금융당국이 수사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음
- 결국, 은행 내부 책임자 내지 금융당국이 적시에 개입하여 불법 송금을 차단하지 못하는 이상 본건과 같은 단기간 '치고 빠지기' 형태의 송금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연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가상자산거래 규율의 국제적 기준 재확인

-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 범국가성** 등 사용 편의성과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아, G20 정상회의와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가 국제기준을 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 3. 2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등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

● 피고인들은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사와 처벌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신종 수법을 장착한 투기세력은 계속 등장할 것임

# V

# 향후 계획

# 1. 피고인들 여죄 및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

• 가상자산 투기 범행의 자금원 및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여죄를 밝히고, 은행직원의 비위행위와 송금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여 본건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겠음

## 2. 다른 범행설계 조직들에 대한 수사

● 일본, 중국 등 해외 자금을 이용하거나 수법을 달리하여 범행한 **다른** 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무역대금을 가장한 가상자산 투기 재발 방지에 힘쓰겠음

## 3.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추진

●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 131억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했던 투기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불법적 투기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사실을 보여 드리고자 함 Ⅲ

# 주요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지위	범죄사실 요지	처분
1	AOO	<甲조직> 중간총책	<ul> <li>'21. 4. ~ '22. 3.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75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3.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51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11.14.)
	(甲·乙조직)	< <u></u>	<ul> <li>'21. 4.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2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15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8.)
	B〇〇 (甲·丙조직)	<甲조직> 중간책	<ul> <li>'21. 4.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2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약 1.6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외국환거래법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1. 14.)
2		<丙조직> 중간책	<ul> <li>'22. 5. ~ '22. 8.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35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2. 5. ~ '22. 8.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29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2.)

순번	피고인	지위	범죄사실 요지	처분
3	C〇〇 (甲조직)	무역업체 대표	<ul> <li>'21. 10. ~ '22. 3.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42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하고,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10. ~ '22. 3.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32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1. 14.)
4	D〇〇 (甲조직)	무역업체 대표	<ul> <li>'21. 10.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35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10.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25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1. 14.)
5	E〇〇 (甲조직)	총책	<ul> <li>'21. 7.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94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6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1. 30.)
<b>6</b> (甲·丙조 <sup>2</sup>	<甲조직> 중간책 F○○ (甲·丙조직) <丙조직> 중간책	<ul> <li>'21. 5.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10.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9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2. 9.)	
			<ul> <li>'22. 5. ~ '22. 8.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35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2. 5. ~ '22. 8.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29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2.)

순번	피고인	지위	범죄사실 요지	처분
<b>7</b> (甲·乙조직)	중간책 G〇〇 (甲·乙조직)		<ul> <li>'21. 4. ~ '22. 3.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75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3.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51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2. 9.)
		< <u></u>	<ul> <li>'21. 4.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2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15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8	H〇〇 (甲조직)	은행 브로커	'22. 3. ~ '22. 5. D○○, N○○로부터 페이퍼컴퍼니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합계 2,110만 원 수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구속기소 ('22. 12. 9.)
9	I〇〇 (丙조직)	총책	<ul> <li>'21. 1. ~ '22. 8.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94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8.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83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2. 19.)
10	J〇〇 (丙조직)	총괄 관리자	<ul> <li>'21. 3. ~ '22. 8.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94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8.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83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2. 19.)

순번	피고인	지위	범죄사실 요지	처분
11	K〇〇 (甲조직)	무역업체 실업주	<ul> <li>'21. 10. ~ '22. 3.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42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10. ~ '22. 3.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32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구속기소 ('22. 12. 22.)
		1		
12	L〇〇 (甲조직)	무역업체 대표	<ul> <li>'21. 4. ~ '21. 10.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38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1. 10.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18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8.)
13	M○○ (甲조직)	실무 담당자	<ul> <li>'21. 10. ~ '21. 11.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15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10. ~ '21. 11.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14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8.)
14	N〇〇 (甲조직)	총괄 관리자	<ul> <li>'22. 2.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2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2. 2.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1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8.)
15	O〇〇 (甲조직)	실무 담당자	<ul> <li>'22. 2.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2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2. 2.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1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8.)

순번	피고인	지위	범죄사실 요지	처분
16	P〇〇 (甲조직)	은행 브로커	'22. 4. H○○로부터 페이퍼컴퍼니 계좌 개설 및 우대 환율 적용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 수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불구속기소 (′23. 1. 18.)
17	QOO (乙조직)	중간책	<ul> <li>'21. 4.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1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0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불구속기소 (′23. 1. 18.)
18	R〇〇 (乙조직)	실무 담당자	'21. 4.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1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불구속기소 ('23. 1. 18.)
19	S〇〇 (丁조직)	총책	● '21. 5. ~ '22. 5. 허위 중계무역대금 약 1.1조원을 해외송금하여 (i) 제3자 지급 신고 의무 위반, (ii) 위계 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불구속기소 ('23. 1. 18.)
20	T〇〇 (丁조직)	총책	● '21. 9.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익금을 취득하여 약 0.78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불구속기소 ('23. 1. 18.)
21	U〇〇 (甲조직, 피의자)	해외 총책	<ul> <li>'21. 7. ~ '22. 5.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94조원 송금 대행하여 (i)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ii)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li> <li>'21. 9. ~ '22. 5.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6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li> <li>【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위반】</li> </ul>	지명수배 ('23. 1. 10.)